

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ARTERA

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
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,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※ 정당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및 예비추첨 진행이 가능하며, 부적격이 확정된 당첨자는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당첨자(예비입주자) 서류제출 및 계약 일정

구분	정당당첨자	예비입주자	장소 및 신청 방법
제출기간	2025.04.26.(토) ~ 04.29.(화) 10:00 ~ 16:30	2025.04.30.(수) ~ 05.02.(금) 10:00 ~ 16:30	※ 사전 방문예약제 운영 · 당사 견본주택 : 충청북도 흥덕구 청주시 외북동 325번지 - 서류 접수 예약 시스템 : 2025.04.23.(수) 10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 - 정당 계약 예약 시스템 : 2025.04.30.(수) 10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 게시 예정
계약기간	2025.05.07.(수) ~ 05.10.(토) 10:00 ~ 16:30	서류제출 대상자, 추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	

※ 특별공급 부부 중복 당첨시 처리방법 :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어 후당첨 무효 처리시,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계좌부활신청서 작성 세대에 한해 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.
※ 사전 방문 예약 시 당첨자의 연락처가 청약 신청 시 연락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자격확인 서류(정보취약계층(고령자 및 장애인) 현장 접수 및 예비 입주자 포함)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
자격확인 필수서류	신분증	청약자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·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 : 주택공급 계약용 ※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 발급 ※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 발급
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 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 -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발급
	청약통장순위 확인서		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

추가 필요서류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
추가 필요서류	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청약자	·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“기존주택 처분 조건”으로 당첨된 경우(견본주택 비치)
	복무 확인서		·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한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기간 명시)
	한부모가족증명서		·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임신진단서	청약자 또는 배우자	· 임신의 경우 ※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		· 임신의 경우(견본주택 비치)
	입양관계증명서		· 입양의 경우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)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
	주민등록표초본(전체)	직계존속	·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“전체포함”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·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단신부임 입증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)	청약자	· 국내기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
	비자 발급 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청약자 및 세대원	-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 발급 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
	출입국사실증명원	배우자 및 세대원	·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청약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현재로 설정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자	·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, “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
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	위임장	청약자	· 견본주택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· 용도 : 주택공급 계약 위임용 ※ 본인 발급용(대리인 발급용 제출 불가) ※ 대리인 접수(계약)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신분증, 도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, 서명 또는 날인 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(실물 지참 필수)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5.04.04.(금)) 이후 발행분]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.
※ 여권 제출 시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바랍니다.
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 에 대한 표기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번호 등 “전체포함” 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장애인 및 고령자인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신청서류 완비 및 접수 시간을 확인바랍니다.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